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3. . . (제 회)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3.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9237호, 2023. 3. 21. 공포, 9. 22. 시행)됨에 따라 새로 도입되는 임시허가, 신속확인 제도의 신청 및 처리를 위한 절차를 규정하고 심사기준을 명확히 하며, 실증특례 신청을 기술을 이전받은 기업이 단독으로 할 수 있게 신청 범위를 넓혀서 제도 이용자의 활용도를 제고하고자 함

또한, 법령정비요청 절차와 필요서류를 명확히 하여 규제특례를 통한 규제개선 효과를 극대화하고, 규제특례가 불승인된 경우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는 절차를 신설하여 규제특례 신청인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실증특례 신청자격 확대(안 제19조의2제1항)

현행 시행령은 공공연구기관만 실증특례를 신청 가능하도록 하여 기업이 단독으로 신기술을 실증하는 것이 불가능했음. 이를 개선하여 실증특례 신청자격을 공공연구기관, 기술을 이전받은 기업, 첨단기술기업, 연구소기업, 산업기술연구조합, 전문연구사업자 등으로 확대하고자 함

나. 실증특례 재심의 신청 절차 신설(안 제19조의3제3항부터 제6항)

신기술을 실증하려는 자가 실증특례를 신청하였으나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규정하고, 재심의 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관계 분야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함

다. 법령정비 요청 절차 신설(안 제19조의9)

규제특례로 지정받아 실증 중이거나 실증을 완료하여 안전성이 입증된 경우 관련 법령의 정비를 요청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신설하고, 이용자의 편익, 안전사고 및 손해발생 여부, 파급효과 및 기대효과, 이해관계자 갈등 조정 여부 등 법령정비를 위한 심사기준을 명확히 함

라. 신속확인, 임시허가의 신청 절차, 심사기준 등 신설(안 제19조의15부터 제19조의20)

신속확인 또는 임시허가를 신청한 경우 제출서류, 처리절차, 유효기간 등을 명확히하였으며, 사업계획, 신청자의 재정적·기술적 능력, 이용자 편익, 이용자 보호방안의 타당성 등 세부심사기준을 규정하여 신청인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3. 7. 21. ~ 8. 8.)

3) 행정규제 : 규제 있음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4의 제목 “(연구개발특구 실증특례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을 “(연구개발특구 규제특례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으로 하고, 제9조의4제1항 중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실증특례(이하 “실증특례”라 한다)”를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실증특례(이하 “실증특례”라 한다) 및 제16조의7제4항에 따른 임시허가”로 하며, 제9조의4제7항 중 “실증특례에 관한 사항”을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로 한다.

제19조의2제1항 중 “법 제1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공공연구기관으로서”를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실증특례를 신청할 수 있는 자는”으로 하고, 단서를 아래와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고, 제3항 중 “법 제1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를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라목중 “실증특례 신청자(제2항에 따라 공동으로 실증특례를 신청한 경우에는 그 공동신청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실증특례 신청자”로 한다.

1.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공공연구기관
2. 공공연구기관으로부터 기술을 이전 받아 해당 기술을 활용하여 신

기술의 실증을 하려는 기업

3.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첨단기술기업

4. 법 제9조의3제1항에 따른 연구소기업

5.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제8조에 따라 설립 인가를 받은 산업기술
연구조합

6. 「연구산업진흥법」 제6조에 따라 신고가 수리된 전문연구사업자
제19조의3제2항제2호 및 제3호 단서를 각각 삭제하고, 제3항부터 제8항
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 제16조의2제7항에 따라 재심의를 신청하려는 자는 제1항의 통
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재심의 신청서에 제19조의2제3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
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재심의 신청서
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
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필요한 기간은 제3항의 기간
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의 신청을 받은 경우 연구개발특
구위원회에 심의 안건을 상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구개발특구위
원회는 재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분야 전문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으로 하
여금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재심의 신청서 (제4항에 따라 보완된 경우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재심의 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 내용이 작성된 것이 명백한 경우
2. 신청 내용이 법 제16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한 경우
3. 제3항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4항에 따른 보완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

⑦ 법 제16조의2제10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상호(명칭), 대표자 성명 및 실증책임자명
2. 주된 사무소 및 특구 내 소재지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증특례의 지정·변경 및 재심의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9조의6 중 “법 제16조의2제8항”을 “법 제16조의2제9항”으로 한다.

제19조의9제1항을 제4항으로 하며, 제2항을 제5항으로, 제2항의 “제1항 후단”을 “제4항 후단”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법 제16조의2제11항에 따라 실증특례 사항과 관련된 법령의 정비

를 요청하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법령정비 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실증특례 적용 및 실증 결과 서류
가. 제19조의2제3항제1호에 따른 실증특례 계획서의 이행 현황
나. 법 제16조의2제3항단서에 따른 조건의 이행 여부(조건을 붙인 경우로 한정한다)
다. 해당 신기술 서비스·제품 관련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의 발생 여부
라. 그 밖에 법령정비 필요 여부 및 개선 방향 판단을 위한 자료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자료
2. 책임보험의 보험기간 연장 또는 손해배상 변경 계획서(법 제16조의2제15항에 따라 실증특례의 유효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기간 동안 실증을 계속하려는 경우로 한정한다)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법령정비 요청서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령의 정비를 요청한 자에게 추가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6조의2제12항에 따라 법령의 정비 필요 여부를 검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1. 해당 신기술에 대한 실증을 통해 도출된 이용자 편익 정도

2. 해당 신기술 관련 안전사고 및 손해 등의 발생 여부
3. 해당 신기술 적용에 따른 파급효과 및 기대효과
4. 해당 신기술 관련 이해관계자 갈등과 조정 여부
5. 그 밖에 법령정비 필요 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9조의10의 제목 “(실증특례의 지정에 따른 책임보험의 가입)”을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에 따른 책임보험의 가입)”으로 하고, 제1항의 “법 제16조의3제7항 본문에 따라 실증특례의 지정을 받은 자로서”와 “신기술의 실증 전까지”를 각각 “법 제16조의3제7항 본문에 따라 실증특례의 지정을 받은 자 및 법 제16조의7제13항 본문에 따라 임시허가를 받은 자로서”와 “기술의 실증 또는 신기술 제품·서비스를 활용한 사업을 시행하기 전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실증특례”와 “법 제16조의2제4항”을 “실증특례 또는 임시허가” 및 “법 제16조의2제4항 및 법 제16조의7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실증특례의”를 “실증특례 또는 임시허가의”로 한다.

제19조의11의 제목 “(실증특례의 지정에 따른 배상방안의 마련)”을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에 따른 배상방안의 마련)”으로 하고, 제1항 중 “법 제16조의3제7항 단서”, “실증특례의 지정을 받은 자” 및 “실증 전까지”를 각각 “법 제16조의3제7항 단서 또는 법 제16조의7제13항 단서”, “실증특례의 지정 또는 임시허가를 받은 자는”, “실증 전 또는 임시허가를 받은 자가 신기술 제품·서비스를 활용한 사업을 시행하기 전까지”로 한

다.

제19조의12의 제목 “(실증특례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 3의2호와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신설한다.

3의2. 진흥재단이 제42조제2의2호부터 제2의4호까지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 및 인력 확보에 필요한 사항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의15부터 제19조의20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15(규제의 신속확인 신청 등) ① 법 제16조의6제1항에 따라 규제의 신속확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신속확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해당 연구개발 과정의 실증 또는 신기술 제품·서비스를 활용한 사업에 대한 설명서
2. 해당 실증 및 사업이 신기술을 활용한 것임을 설명하는 자료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6조의6제1항에 따라 확인의 신청을 받은 사항이 다른 행정기관의 소관 사항인 경우에는 그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신속확인 신청서 사본 및 첨부서류를 보내

야 한다.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6조의6제4항에 따라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회신 받은 사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신속확인 결과 통지서에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19조의16(임시허가의 신청 등) ① 법 제16조의7제1항에 따라 임시허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임시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6조의2제14항에 따라 임시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4호에 따른 안전성 검증자료 및 이용자 보호방안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내용을 담은 사업계획서

가. 신기술 서비스·제품의 명칭 및 내용

나. 신기술 서비스·제품의 사업범위·추진방법·주요 이용 대상자 및 임시허가의 기간 등

다. 임시허가 신청자의 재정적·기술적 능력

2. 해당 신기술 서비스·제품이 법 제16조의7제1항 각 호에 해당함을 설명하는 자료

3. 해당 신기술 서비스·제품의 혁신성 및 이용자의 편익 증진에 관한 설명자료

4. 해당 신기술 서비스·제품의 안전성 검증 자료 및 이용자 보호방안

5. 그 밖에 임시허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인정하는 것으로서 과학

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요구하는 자료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 내용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보완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제2항에 따라 보완된 경우를 포함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1. 신청 내용이 법 제16조의7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한 경우
2.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2항에 따른 보완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 내용이 작성된 것이 명백한 경우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6조의7제4항에 따른 임시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임시허가서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1. 허가번호 및 허가 연월일
2. 상호 또는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허가 대상 신기술 서비스·제품의 명칭
5. 허가 대상 신기술 서비스·제품의 주요내용

6. 유효기간

7. 허가조건

⑤ 법 제16조의7제8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상호 또는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2. 주된 사무소 및 특구 내 소재지

⑥ 법 제16조의7제11항에 따른 시험·검사의 비용은 임시허가를 신청하려는 자가 부담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임시허가의 세부기준·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다.

제19조의17(임시허가의 유효기간 등) ① 법 제16조의7제5항에 따른 임시허가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② 법제16조의7제5항 후단에 따라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임시허가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임시허가서 사본

2. 해당 신기술 서비스·제품의 이용현황 및 실적에 관한 자료

3. 해당 신기술 서비스·제품 관련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의 발생 여부

4. 책임보험의 보험기간 연장 또는 손해배상 변경 계획서

5. 해당 신기술 서비스·제품 관련 법령 정비 여부 및 개선방향 판단을 위한 자료

6. 그 밖에 임시허가 연장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③ 관계기관의 장은 법 제16조의7제9항에 따른 법령정비가 완료된 경우 지체 없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통지해야 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통지를 받으면 임시허가를 받은 자에게 법령정비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제19조의18(임시허가의 세부 심사기준) 법 제16조의7제6항제5호에 따른 임시허가에 필요한 사항의 세부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신기술 서비스·제품을 활용한 구체적인 사업계획
2. 임시허가 신청자의 재정적·기술적 능력
3. 관련 시장 및 이용자 편익에 미치는 영향 및 효과
4. 해당 신기술 서비스·제품의 안전성 및 이용자 보호방안의 타당성
5.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임시허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9조의19(임시허가를 받은 자에 대한 시정명령)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6조의7제4항에 따라 임시허가를 받은 자가 법 제16조의8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라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자에게

해당 기한 내에 시정을 하지 못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시정을 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힌 문서로 해야 한다.

1. 법 제16조의8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알리는 내용
2. 시정명령의 내용
3. 시정기간
4. 시정명령에 대한 불복 절차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시정명령의 대상이 되는 임시허가를 받은 자에게 사전에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제19조의20(임시허가의 취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6조의8 제1항에 따라 임시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제42조제2의2호 중 “실증특례 신청서의 접수·확인, 통계 수집 등”을 “실증특례 신청서·변경 신청서·연장 신청서의 접수·확인, 적용결과의 접수·검토, 적용결과의 공개, 책임보험 가입의 확인 및 통계 수집 등”으로 하고, 제2의3호 및 제2의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3. 법 제16조의6에 따른 신속확인에 관한 업무 중 신속확인 신청서의 접수·확인, 통계 수집 등 지원업무

2의4. 법 제16조의7에 따른 임시허가에 관한 업무 중 임시허가 신청서·변경 신청서·연장 신청서의 접수·검토, 책임보험 가입의 확인 및 통계수집 등 지원업무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의4(연구개발특구 <u>실증특례</u>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u>법 제7조제7항에 따라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실증특례(이하 “실증특례”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연구개발특구위원회에 연구개발특구 실증특례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u> ① ~ ⑥ (생략) ⑦ 전문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u>실증특례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사안별로 검토하기 위하여 검토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검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전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전문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u> 제19조의2(실증특례의 신청) ① <u>법 제1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공공연구기관으로서 실증특례를 신청하는 날을 기준으로 본사, 연구소 또는 교</u>	제9조의4(연구개발특구 <u>규제특례</u>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 <u>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실증특례(이하 “실증특례”라 한다) 및 제16조의7제4항에 따른 임시허가에</u> ----- ----- ---- <u>연구개발특구 규제특례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u>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 <u>실증특례 및 임시허가에 관한 사항을</u> ----- ----- ----- ----- ----- ----- -----. 제19조의2(실증특례의 신청) ① <u>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실증특례를 신청할 수 있는 자는</u> -- ----- ----- -----

육시설 등 기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연구개발특구에 있는 자를 말한다.

<신 설>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자는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과 공동으로 실증특례를 신청할 수 있다.

로서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공공연구기관
2. 공공연구기관으로부터 기술을 이전 받아 해당 기술을 활용하여 신기술의 실증을 하려는 기업
3.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첨단기술기업
4. 법 제9조의3제1항에 따른 연구소기업
5.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제8조에 따라 설립 인가를 받은 산업기술연구조합
6. 「연구산업진흥법」 제6조에 따라 신고가 수리된 전문연구사업자

② (삭 제)

1. 공공연구기관으로부터 기술을 이전(실증특례를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기술을 이전받은 경우로 한정한다)받아 해당 기술을 활용하여 신기술의 실증을 하려는 중소기업

2. 실증특례를 신청하는 날을 기준으로 본사, 영업소, 연구소, 교육시설 또는 생산공장 등 중소기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연구개발특구에 있는 중소기업

③ 법 제1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실증특례를 신청하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실증특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생략)

가. ~ 다. (생략)

라. 실증특례 신청자(제2항에 따라 공동으로 실증특례를 신청한 경우에는 그 공동신청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재정적·기술적 능력

③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

1. (현행과 같음)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실증특례 신청자-----

2. ~ 4. (생 략) ④ ~ ⑤ (생 략) 제19조의3(실증특례의 지정 등) ① (생 략) ② (생 략) 1. (생 략) 2. 상호(명칭) 및 대표자 성명[제19조의2제2항에 따라 공동으로 실증특례를 신청한 경우에는 그 공동신청자의 상호(명칭) 및 대표자 성명을 포함한다]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제19조의2제2항에 따라 공동으로 실증특례를 신청한 경우에는 그 공동신청자의 주된 사무소를 포함한다) 4. ~ 8. (생 략) <신 설> <신 설>	2. ~ 4.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제19조의3(실증특례의 지정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u>단서 삭제</u>) 3. -----(<u>단서 삭제</u>) 4. ~ 8. (현행과 같음) ③ <u>법 제16조의2제7항에 따라 재심의 신청하려는 자는 제1항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재심의 신청서에 제19조의2제3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u> ④ <u>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재심의 신</u>
--	--

<신 설>

<신 설>

청서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필요한 기간은 제3항의 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의 신청을 받은 경우 연구개발특구위원회에 심의 안건을 상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구개발특구위원회는 재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분야 전문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재심의 신청서(제4항에 따라 보완된 경우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재심의 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 내용이 작성된 것

<신 설>

<신 설>

제19조의6(실증특례의 지정을 위한 시험·검사기관의 지정) 법 제16조의2제8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인력과 기술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

이 명백한 경우

2. 신청 내용이 법 제16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한 경우

3. 제3항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4항에 따른 보완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

⑦ 법 제16조의2제10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상호(명칭), 대표자 성명 및 실증책임자명
2. 주된 사무소 및 특구 내 소재지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증특례의 지정·변경 및 재심의를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9조의6(실증특례의 지정을 위한 시험·검사기관의 지정) 법 제16조의2제9항-----

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19조의9(실증특례에 따른 법령
정비)

<신 설>

-----.

제19조의9(실증특례에 따른 법령
정비)

① 법 제16조의2제11항에 따라 실
증특례 사항과 관련된 법령의
정비를 요청하려는 자는 과학기
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법
령정비 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
통신부장관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실증특례 적용 및 실증 결과 서
류

가. 제19조의2제3항제1호에
따른 실증특례 계획서의 이
행 현황

나. 법 제16조의2제3항단서에
따른 조건의 이행 여부(조건
을 붙인 경우로 한정한다)

다. 해당 신기술 서비스·제품
관련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의 발생 여부

라. 그 밖에 법령정비 필요 여
부 및 개선 방향 판단을 위한
자료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

<신 설>

<신 설>

부장관이 인정하는 자료

2. 책임보험의 보험기간 연장
또는 손해배상 변경 계획서(법
제16조의2제15항에 따라 실증
특례의 유효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기간 동안 실
증을 계속하려는 경우로 한정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관
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
라 제출받은 법령정비 요청서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
우에는 법령의 정비를 요청한
자에게 추가 자료의 제출을 요
청할 수 있다.

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6
조의2제12항에 따라 법령의 정
비 필요 여부를 검토하는 경우
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
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1. 해당 신기술에 대한 실증을
통해 도출된 이용자 편익 정도
2. 해당 신기술 관련 안전사고
및 손해 등의 발생 여부
3. 해당 신기술 적용에 따른 파
급효과 및 기대효과

① (생략)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후단에 따라 통보를 받은 경우 관련 실증특례의 지정을 받은 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제19조의10(실증특례의 지정에 따른 책임보험의 가입) ① 법 제16조의3제7항 본문에 따라 실증특례의 지정을 받은 자로서 책임보험에 가입한 자는 책임보험의 가입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를 신기술의 실증 전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책임보험의 보험

4. 해당 신기술 관련 이해관계자 갈등과 조정 여부

5. 그 밖에 법령정비 필요 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현행 제1항과 같음)

⑤ -----
제4항 후단-----

-----.

제19조의10(실증특례 및 임시허가에 따른 책임보험의 가입) ① 법 제16조의3제7항 본문에 따라 실증특례의 지정을 받은 자 및 법 제16조의7제13항 본문에 따라 임시허가를 받은 자로서-----

-----신기술의 실증 또는 신기술 제품·서비스를 활용한 사업을 시행하기 전까지 -----
-----.

② -----

기간 만료일은 실증특례 유효기간의 만료일 이후가 되어야 하며, 법 제16조의2제4항에 따라 유효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연장기간을 반영하여 책임보험을 갱신하거나 새로 가입해야 한다.

③ (생략)

④ 제1항에 따른 책임보험은 실증특례의 대상이 되는 신기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생명·신체·재산상 손해에 대한 배상을 보장하는 것이어야 한다.

⑤ ~ ⑥ (생략)

제19조의11(실증특례의 지정에 따른 배상방안의 마련) ① 법 제16조의3제7항 단서에 해당하여 책임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실증특례의 지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고 신기술의 실증 전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협의하여 배상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실증특례 또는 임시허가-----

-, 법 제16조의2제4항 및 법 제16조의7제5항-----

--.

③ (현행과 같음)

④ ----- 실증특례 또는 임시허가의 -----

-----.

⑤ ~ ⑥ (현행과 같음)

제19조의11(실증특례 및 임시허가에 따른 배상방안의 마련) ① 법 제16조의3제7항 단서 또는 법 제16조의7제13항 단서-----

----- 실증특례의 지정 또는 임시허가를 받은 자는 -----
--- 실증 전 또는 임시허가를 받은 자가 신기술 제품·서비스를 활용한 사업을 시행하기 전까지 -----

1. ~ 2. (생략)

② (생략)

제19조의12(실증특례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법 제16조의4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이란 다음 각 호의 지원을 말한다.

1. ~ 3. (생략)

<신설>

4. (생략)

<신설>

-----.

1. ~ 2.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19조의12(실증특례 및 임시허가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항 신설]① (현행과 같음)

1. ~ 3. (현행과 같음)

3의2. 진흥재단이 제42조제2의2호부터 제2의4호까지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 및 인력 확보에 필요한 사항

4. (현행과 같음)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의15(규제의 신속확인 신청 등) ① 법 제16조의6제1항에 따라 규제의 신속확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신속확인 신청서에

<신 설>

<신 설>

<신 설>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
출해야 한다.

1. 해당 연구개발 과정의 실증
또는 신기술 제품·서비스를 활
용한 사업에 대한 설명서

2. 해당 실증 및 사업이 신기술을
활용한 것임을 설명하는 자료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6조의6제1항에 따라 확인의
신청을 받은 사항이 다른 행정
기관의 소관 사항인 경우에는
그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지
체 없이 신속확인 신청서 사본
및 첨부서류를 보내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6조의6제4항에 따라 소관 행
정기관의 장에게 회신 받은 사
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신속확인 결과 통지서에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
다.

제19조의16(임시허가의 신청 등)

① 법 제16조의7제1항에 따라
임시허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과
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임시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6조의2제14항에 따라 임시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4호에 따른 안전성 검증자료 및 이용자 보호방안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내용을 담은 사업계획서

가. 신기술 서비스·제품의 명칭 및 내용

나. 신기술 서비스·제품의 사업범위·추진방법·주요 이용대상자 및 임시허가의 기간 등
다. 임시허가 신청자의 재정적·기술적 능력

2. 해당 신기술 서비스·제품이 법 제16조의7제1항 각 호에 해당함을 설명하는 자료

3. 해당 신기술 서비스·제품의 혁신성 및 이용자의 편익 증진에 관한 설명자료

<신 설>

<신 설>

4. 해당 신기술 서비스·제품의
안전성 검증 자료 및 이용자 보
호방안

5. 그 밖에 임시허가에 필요하
다고 인정되는 인정하는 것으
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 요구하는 자료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
1항에 따른 신청 내용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보완
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
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
1항에 따른 신청(제2항에 따라
보완된 경우를 포함한다)이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경우에는 해당 신청을 반려
할 수 있다.

1. 신청 내용이 법 제16조의7제
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한 경우

2.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
지 않거나 제2항에 따른 보완요
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
법으로 신청 내용이 작성된 것

<신 설>

<신 설>

<신 설>

이 명백한 경우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6조의7제4항에 따른 임시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임시허가서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1. 허가번호 및 허가 연월일
2. 상호 또는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허가 대상 신기술 서비스·제품의 명칭
5. 허가 대상 신기술 서비스·제품의 주요내용
6. 유효기간
7. 허가조건

⑤ 법 제16조의7제8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상호 또는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2. 주된 사무소 및 특구 내 소재지

⑥ 법 제16조의7제11항에 따른 시

<신 설>

험·검사의 비용은 임시허가를
신청하려는 자가 부담한다.

<신 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
한 사항 외에 임시허가의 세부
기준·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 정한다.

<신 설>

제19조의17(임시허가의 유효기간
등) ① 법 제16조의7제5항에 따
른 임시허가 유효기간은 2년으
로 한다. 다만 과학기술정보통신
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② 법 제16조의7제5항 후단에 따
라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려
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으로 정하는 임시허가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
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
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임시허가서 사본

2. 해당 신기술 서비스·제품의
이용현황 및 실적에 관한 자료

3. 해당 신기술 서비스·제품 관
련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의

<신 설>

<신 설>

<신 설>

발생 여부

4. 책임보험의 보험기간 연장
또는 손해배상 변경 계획서

5. 해당 신기술 서비스·제품 관
련 법령 정비 여부 및 개선방향
판단을 위한 자료

6. 그 밖에 임시허가 연장을 위
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③ 관계기관의 장은 법 제16조의7
제9항에 따른 법령정비가 완료
된 경우 지체 없이 과학기술정
보통신부장관에게 통지해야 한
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
4항에 따른 통지를 받으면 임시
허가를 받은 자에게 법령정비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제19조의18(임시허가의 세부 심사
기준) 법 제16조의7제6항제5호
에 따른 임시허가에 필요한 사
항의 세부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신기술 서비스·제품을
활용한 구체적인 사업계획

2. 임시허가 신청자의 재정적·

<신 설>

<신 설>

<신 설>

기술적 능력

3. 관련 시장 및 이용자 편익에 미치는 영향 및 효과

4. 해당 신기술 서비스·제품의 안전성 및 이용자 보호방안의 타당성

5.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임시허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9조의19(임시허가를 받은 자에 대한 시정명령)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6조의7제4항에 따라 임시허가를 받은 자가 법 제16조의8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라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자에게 해당 기간 내에 시정을 하지 못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

	<u>1항에 따라 시정을 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힌 문서로 해야 한다.</u> <u>1. 법 제16조의8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알리는 내용</u> <u>2. 시정명령의 내용</u> <u>3. 시정기간</u> <u>4. 시정명령에 대한 불복 절차</u>
<u><신 설></u>	<u>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시정명령의 대상이 되는 임시허가를 받은 자에게 사전에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u>
<u><신 설></u>	<u>제19조의20(임시허가의 취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6조의8제1항에 따라 임시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u>
제42조(업무의 위탁) (생략) 1. ~ 2. (생략) 2의2. 법 제16조의2부터 제16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른 실증특례에 관한 업무 중 <u>실증특례</u>	제42조(업무의 위탁) (현행과 같음) 1. ~ 2. (현행과 같음) 2의2. ----- ----- ----- <u>실증특례</u>

<u>신청서의 접수·확인, 통계 수집 등 지원업무</u> <u><신 설></u> 3. ~ 4. (생 략)	<u>신청서·변경 신청서·연장 신청서의 접수·확인, 적용결과의 접수·검토, 적용결과의 공개, 책임보험 가입의 확인 및 통계 수집 등-----</u> -- <u>2의3. 법 제16조의6에 따른 신속확인에 관한 업무 중 신속확인 신청서의 접수·확인, 통계 수집 등 지원업무</u> <u>2의4. 법 제16조의7에 따른 임시허가에 관한 업무 중 임시허가 신청서·변경 신청서·연장 신청서의 접수·검토, 책임보험 가입의 확인 및 통계수집 등 지원업무</u> 3. ~ 4. (현행과 같음)
---	--

〈 의안 소관 부서명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역과학기술진흥과	
연 락 처	(044) 202 - 4743